

#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 1. 자료요청 대상 기관·단체 및 요청자료의 범위(안 제3조의2, 별표 1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보험사기방지 특별법(이하 특별법) 위임에 따라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알선·광고 행위 조사를 위하여 자료요청 대상 기관·단체 및 요청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**대상기관:** 국민건강보험공단·근로복지공단·국민연금공단·한국교통안전공단·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- **요청자료:** 공보험금 등의 지급·심사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, 보험사기 알선·유인·광고를 내용으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가입정보 및 인터넷 접속정보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공보험의 보험사기 관련 적발사례를 분석하여 민간보험 기획조사로 연계하고 필요시 공·사보험 공동 조사를 통하여 보험사기 예방
- 온라인에서 보험사기 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를 하는 자의 가입정보 및 접속정보를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조직적·지능적 보험사기 예방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## 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(안 제3조의3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특별법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시 따라야 할 기준 및 협의 대상기관을 규정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시 환자의 병력·상병·건강상태 및 진료상 필요성, 의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함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시 금융위원회, 검찰청, 경찰청, 금융감독원과 협의토록 함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공보험의 보험사기 관련 적발사례를 분석하여 민간보험 기획조사로 연계하고 필요시 공·사보험 공동 조사를 통하여 보험사기 예방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### 3.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고지 등(안 제3조의4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특별법 위임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한 보험회사는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하도록 함
- 피해자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도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피해사실 전파하도록 함
-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(예: 범칙금 환급)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하여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근거 마련
- 그 밖에 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할증된 보험료 환급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#### 4. 그 밖에 업무 위탁(안 제4조),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(안 제5조), 과태료 부과기준(안 제6조)

#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특별법 위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함

#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자료요청권 및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
-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사유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 마련

#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# 라. 입법효과

- 금융감독원(보험사기대응단 등)이 보험사기 조사,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조사, 보험소비자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
- 과태료 부과 기준의 구체적 타당성 및 형평성을 제고

#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